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 
(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12호
- 나. 제출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 교육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교육안전의 범위,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~제6조)
- 라. 교육안전위원회 설치·기능,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수당 등  
(안 제7조~제14조)
- 마. 교육 및 홍보(안 제15조)
- 바. 시행규칙(안 제16조).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「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금천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에 대하여
 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 - 안 제5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안전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
  -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
  - 안 제7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
  - 안 제8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
  - 안 제9조~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대하여
  -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구 분	조례안 주요 내용
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조례의 적용범위 (제1조~제3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의 목적, “학생”, “교육안전”, “교육기관” 정의</li> <li>○ 조례의 적용범위(교육안전의 범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활동 안전, 교육환경 안전, 교통안전, 시설안전, 보건안전, 급식 안전, 안전문화 등</li> </ul> </li> </ul>
구청장의 책무, 계획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(제4조~제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청장 책무(교육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)</li> <li>○ 교육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책추진 방향,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, 유관기관 협력 등</li> </ul> </li> </ul>
교육안전위원회 기능,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운영 등 (제7조~제14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, 정책, 유관기관 협조 등 심의위원회 구성, 임기, 운영 등</li> <li>- 15명 이내 당연직, 위촉직으로 구성, 위원장은 소관사무국장,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 호선</li> <li>- 임기 2년(1회 연임가능), 운영(정기 연 1회 및 임시)</li> </ul> </li> </ul>
교육, 홍보, 보조금 지원 (제15조~제17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 및 홍보(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·보급)</li> <li>○ 보조금의 지원(교육안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 지원)</li> </ul>

- 최근 학생들의 체험학습, 야외수업, 스포츠 행사, 동아리 활동 등 학교 밖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,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교육청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참고로 서울시 3개 자치구와 인천광역시 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67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16.>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, 2024. 1. 16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##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63호, 2021. 9. 24., 일부개정]

**제3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